#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공무원 경	직무관련 소	소송비용 지원 조례안
의안번호	제97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8.19.	회부연월일	2022. 8.19.

## 1. 제안이유

○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·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므로써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 제기 및 기소,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소속 공무원은 무죄 또는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음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(안 제4조)
- 다.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지원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(안 제6조)

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·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O 지방세법 제13조, 제28조,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